

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47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5. 6.
제 출 자 :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가. 혁신도시 내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(준공 : 2015년 9월)됨에 따라 2개의 지관을 본관 및 분관으로 명칭을 구분하고
- 나.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상위법 개정사항을 해당 법령에 맞게 반영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의무사항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

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 변경 : 「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」 → 「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
- 나. 종합사회복지관 명칭과 위치 구분(안 제3조)

명 칭	위 치
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본관	울산광역시 중구 종가3길 15(유곡동)
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분관	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로 88(남외동)

- 다. 사업내용 개정(안 제4조)
 - 가정·아동·청소년·노인·장애인복지사업 내용 : 삭제
 - 사례관리·서비스제공·지역조직화 기능사업 등 : 추가
- 라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 정비

3. 근거법규

- 가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
- 나.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3조의2

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 사항 : 예산담당 협의
- 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- 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 : 원안동의
- 라. 부패유발요인의 검토 : 해당없음
- 마. 입법예고 : 2015. 5. 18 ~ 2015. 6. 8.(의견없었음)

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”를 “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”을 “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“위탁”이라 함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사회복지관(이하 “복지관”이라 한다)”을 ““위탁”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(이하 “복지관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권한사항중”을 “권한사항 중”으로, “비영리법인”을 “비영리법인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“수탁”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”을 ““수탁”이란 수탁자가”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명칭 및 위치)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.

명 칭	위 치
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본관	울산광역시 중구 종가3길 15(유곡동)
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분관	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로 88(남외동)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사업내용)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사례관리 기능사업 : 사례발굴, 사례개입, 서비스연계
2. 서비스제공 기능사업 : 가족기능강화, 지역사회보호, 교육문화, 자활지원 등
3. 지역조직화 기능사업 : 복지네트워크 구축, 주민조직화, 자원개발 및 관리
4.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중”을 “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”로 한다.

(제178회-본회의제2차부록)

제6조 본문 중 “위·수탁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”을 “위·수탁에 필요한 사항을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단,”을 “단, 복지관 분관의”로, “임대기간내”를 “임대기간 내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기타수입금”을 “그 밖의 수입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제9조제1호 중 “제5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5조에 따른”으로, 같은 조 제2호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감독)”을 “(지도·감독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지도·감독을 받아야 한다.
- 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,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.
-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2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
<u>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</u>	<u>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</u>						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----- -----.</p>						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위탁”이라 함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사회복지관(이하 “복지관”이라 한다) 운영에 대한 권한사항중 일부를 상호협약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2. “수탁”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구청장으로부터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“위탁”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(이하 “복지관”이라 한다)----- 권한사항 중 ----- 비영리법인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----- -----.</p> <p>2. “수탁”이란 수탁자가 ----- ----- -----.</p>						
<p>제3조(명칭 및 소재지)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“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”이라 하며,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병영삼일아파트 단지 내에 둔다.</p>	<p>제3조(명칭 및 위치)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명 칭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 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본관</td> <td>울산광역시 중구 종가3길 15 (유곡동)</td> </tr> <tr> <td>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분관</td> <td>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로 88 (남외동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명 칭	위 치	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본관	울산광역시 중구 종가3길 15 (유곡동)	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분관	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로 88 (남외동)
명 칭	위 치						
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본관	울산광역시 중구 종가3길 15 (유곡동)						
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분관	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로 88 (남외동)						
<p>제4조(복지관의 운영) 복지관에서는 지역내 저소득주민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교육 및 상담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</p>	<p>제4조(사업내용)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						

(제178회-본회의 제2차부록)

현 행	개 정 안
<p>1. 가정복지사업 가. 가정문제 종합상담 나. 취업·부업안내 (무료직업안내소 운영) 다.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상담 및 사후 관리</p> <p>2. 아동복지사업 가. 아동선도 및 가정교육 나. 어린이 기능교육 다. 육아보육교실 운영</p> <p>3. 청소년복지사업 가. 청소년 상담 및 교양교육 나. 청소년 독서실운영 다. 근로청소년 사회교육</p> <p>4. 노인복지사업 가. 노인 사회교육 및 여가지도 나. 노인가정 봉사원 파견</p> <p>5. 장애인복지사업 가. 장애인서비스 알선 및 이송 나. 재가 장애인 서비스</p> <p>6.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가. 주민 사회교육 나. 주민 편의시설 제공 다. 자원봉사자 양성 라. 후원자 개발</p> <p>7. 그 밖의 저소득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업</p>	<p>1. 사례관리 기능사업 : 사례발굴, 사례개입, 서비스연계</p> <p>2. 서비스제공 기능사업 : 가족기능강화, 지역사회보호, 교육문화, 자활지원 등</p> <p>3. 지역조직화 기능사업 : 복지네트워크 구축, 주민조직화, 자원개발 및 관리</p> <p>4.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
<p>제5조(운영의 위탁) 구청장은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운영의 위탁) -----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-----.</p>
<p>1. 2. (생략)</p>	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위·수탁의 협약) 제5조에 따른 복지관운영의 위·수탁은 구청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·수탁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해야한다. 단, 위탁기간은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건물의 무료 임대기간내에서 협약으로 정한다.</p>	<p>제6조(위·수탁의 협약) ----- 위·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----- 단, 복지관 분관의 ----- 임대기간 내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운영비등) ① 복지관의 운영 비용은 보조금과 기타수입금으로 한다.</p> <p>② 구청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운영비등) ① ----- 그 밖의 수입금-----.</p> <p>②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</p>
<p>제8조(수탁자의 의무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 사항에 대한 구 관계직원의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수탁자의 의무) ① ~ 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</p>
<p>제9조(위탁의 취소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1. 수탁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한 때</p> <p>2. 수탁자가 제8조에 의한 의무를 어겼을 때</p> <p>3.6. (생략)</p>	<p>제9조(위탁의 취소) ----- -----</p> <p>1.----- 제5조에 따른 -----</p> <p>2.----- 따른 -----</p> <p>3.6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감독) 구청장은 필요시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	<p>제10조(지도·감독)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지도·감독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,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.</p> <p>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
<p>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2조(시행규칙) ----- 시행에 ----- -----.</p>

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1147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심사경과

- 제출연월일 : 2015. 6. 30.(화)
-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위원회회부 : 2015. 7. 1.(수)
- 위원회심사 : 2015. 7. 17.(금)

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복지경제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혁신도시 내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(준공 : 2015년 9월)됨에 따라 2개의 복지관을 본관 및 분관으로 명칭을 구분하고
-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상위법 개정사항을 해당 법령에 맞게 반영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의무사항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

나. 주요골자

- 제명 변경 : 「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」 → 「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
- 종합사회복지관 명칭과 위치 구분(안 제3조)

명칭	위치
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본관	울산광역시 중구 종가3길 15(유곡동)
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분관	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로 88(남외동)

○ 사업내용 개정(안 제4조)

- 가정·아동·청소년·노인·장애인복지사업 내용 : 삭제
- 사례관리·서비스제공·지역조직화 기능사업 등 : 추가

○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 정비

4. 근거법령

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

○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3조의2

5. 검토보고(전문위원 강기환)

○ 본 개정 조례안은

- 혁신도시 내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됨에 따라 2개의 복지관을 본관 및 분관으로 명칭을 구분하고,
-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상위법 개정사항을 해당 법령에 맞게 반영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의무사항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

○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